



환경관리 **질의응답**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위탁처리에 관한 질의

❶ 폐기물 매립시설에 발생하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침출수 처리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바, 처리시설의 고장 및 수리 등 불가피하게 침출수를 처리할수 없는 경우 폐수 일부를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가 가능한지 또 일일 위탁량은 어느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탁처리가 가능하다면 위탁처리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어떻게되는지요?

❷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나목 2) 마)의 규정에 의거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처리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및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가측정관련 문의

❶ 자가측정항목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특정대기오염물질 [(측정주기 : 2회/월) - HCL, HF], 일반대기오염물질 [(측정주기 : 1회/6월) - 먼지, NH₃, NO_x] 특정대기유해물질(HCL, HF)이 발생하는 배출구에서 월 2회 특정유해물질을 자가측정할시, 측정항목은 특정유해물질만 해당이 되는지, 아님 먼지, NH₃, NO_x도 같이 측정해야 되는지요?

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한하여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하면 됩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처리건

❶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목재를 기계적파쇄 중간처리 업체에서 처리시 위반사항인지요? 저희 업체의 영업대상 품목은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가구, 폐피혁 등입니다. 폐목재는 기계적으로 파쇄 또는 분쇄하여 톱밥과 우드 칩을 생산하여 각 업체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❷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은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소각전문중간처리업 및 재활용업)로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소각전문중간처리업 및 재활용업)는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을 추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관련

- Q 1.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상 폐수처리능력은 400톤이며, 여러 번의 변경신고 과정을 거쳐 폐수배출량은 현재 허가증상 280톤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상의 폐수배출량은 가끔씩(한달에 4~5회 정도) 280톤을 넘어 배출하고 있을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 2.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범위에 있어 폐수배출량이 허가 또는 신고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라 함은 최종방류구 유량계를 거친 폐수배출량이 한번만 50% 이상 증가하여도 변경허가 나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의 평균 증가량을 의미하는지 여부?
- 3.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경우 허가 당시 또는 신고 당시라 함은 최초의 설치허가나 설치신고 당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당시를 말하는 것인지요?

- A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3]에 사업장의 규모의 구분은 1년중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당초 신고보다 사업장 운영으로 인하여 폐수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귀 사업장의 경우 420톤이상)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이 경우, 폐수배출량 이라함은 폐수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최종방류구의 유량계를 통과한 양을 의미합니다.
 - 사업장 운영으로 인하여 폐수배출량이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변경하기 직전 허가증(신고증명서)에 명시된 양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폐수처리 중 산정시 폐수배출량이란?

- Q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서 폐수배출량이 하천에 방류하는 폐수방류량(방류수유량계통과후)인지,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량 인지요?
- 2.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관로를 통하여 생산공

정에 재이용되는 물」이란 반드시 생산공정에만 사용되는 물만 말하는 것인지, 청소용으로 사용된 다음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물도 포함되는지요?

- A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공정에 재이용하는 물이라 함은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것으로 사업장내 청소용 수를 폐수처리장에 유입하여 배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위탁처리에 관한 질의

- Q 폐기물 매립시설에 발생하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침출수 처리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바, 처리시설의 고장 및 수리 등 불가피하게 침출수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폐수 일부를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가 가능한지 또 일일 위탁량은 어느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탁처리가 가능하다면 위탁처리를 하기위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나목 2) 마)의 규정에 의거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처리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및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